

종전('15.9월 이후)	현행('24.12월 이후)	개정(안)
1.5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설계도서(실시설계) 작성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 및 자재 등의 변동 가능성이 높은 제1호의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구조검토는 설계단계에서 시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개략 구조검토를 말하며, 개략 구조검토의 세부방법, 범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3.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4.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1.5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부에서 고시한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를 따라야 한다. 1~4. 삭제	1.5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설계도서(실시설계) 작성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과 같고, 이 경우 구조검토를 위한 상세도면 작성, 수량산출, 단가적용 등 필요한 세부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 및 자재 등의 변동 가능성이 높은 제3호의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구조검토는 설계단계에서 시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개략 구조검토(상세도면 미작성)로 갈음할 수 있다 1.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2.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3.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다만, 발주청 필요시 해당기준 미만이라도 구조검토 가능) 4.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